

관세청 일반직공무원(관세9급 무도)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관세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5월 18일

관 세 청 장

1 임용예정 인원(1개 직위, 총 15명)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 기간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무도	관세서기보	15명	정년 적용	전국세관

2 임용예정 직무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무도	관세서기보	○ 마약류 등 밀수 단속 수사업무 수행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6.10.1.)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6.10.1.) 기준]

채용 분야	직위별 요건	
무도	자격증	①태권도 ②유도 ③검도 공인 3단 이상 보유자 (단일 종목으로 한함) ※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
	경력	특수부대에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3년 이상 해당부대의 고유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자 ※ 특수부대: [육군] 정보사(HID), 특전사, 신속대응여단(구,특공여단), 특공연대, 강습대대, 제1산악여단(구,8특공대), 35특수임무대대(구,35특공임무대대), 군사경찰특수임무대, 수색대대, [해군] 정보사(UDU)·특수전전단(SSU, UDT)·군사경찰특임반, [공군] 항공구조사(SART), 항공특수통제사(구,공정통제사(CCT)), 군사경찰특수임무소대(반), [해병대] 특수수색대대(구,수색대대), 군사경찰특별경호대(구,군사경찰특임대) ※ 특수부대에 소속되어 있으나 행정·보급·취사·차량운전 등 지원보직에서 근무한 경력은 해당부대의 고유업무 근무경력에서 제외함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자격증, 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자격증, 경력 중 반드시 1개만 선택하여 응시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6.10.1.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자격증의 범위

-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

○ 경력의 범위

- 특수부대의 범위

[육군] 정보사(HID), 특전사, 신속대응여단(구,특공여단), 특공연대, 강습대대, 제1산악여단(구,8특공대), 35특수임무대대(구,35특공임무대대), 군사경찰특수임무대, 수색대대, [해군] 정보사(UDU)·특수전전단(SSU, UDT)·군사경찰특임반, [공군] 항공구조사(SART), 항공특수통제사(구,공정통제사(CCT)), 군사경찰특수임무소대(반), [해병대] 특수수색대대(구,수색대대), 군사경찰특별경호대(구,군사경찰특임대)

- 고유업무 제외 기준

특수부대에 소속되어 있으나 행정·보급·취사·차량운전 등 지원보직에서 근무한 기간은 해당부대의 고유업무 근무경력 산정에서 제외함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특수부대 경력을 의미하며, 특수부대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증명서 발급 담당자 성명, 연락처, 관인 기재)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연·월·일(휴직, 시간제 근무 해당시 휴직기간 및 주당근무시간 필수기재) 직위(급) 및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특수부대 고유업무 근무경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주40시간)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5 시험 방법

가. 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과목별 문항·점수 : 1차사회, 2차관세법개론 / 총 65문항, 200점 만점

구 분	시험과목	문항수	배 점	점 수	비 고
1차 시험	사회	25	4	100	객관식 선택형 (4지)
2차 시험	관세법개론	40	2.5	100	

- 출제범위 및 난이도
 - 사회 : 경제, 법과 정치, 사회·문화 범위에서 출제
 - 관세법개론 : 현행 관세법 전문(제2장 제4절, 제3~5장 제외)

< 관세법 제외 범위 >

제2장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가산특전대상자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중복 불가)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5%,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②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⑦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

**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합격자 결정

-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 내 포함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 처리 : 필기시험 결과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 후 발생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나. 3차시험 : 서류전형

- 1·2차 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3차 시험 응시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소극적 전형)

다. 4차시험 : 면접시험

- 3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개 항목마다, 각각 ‘상’, ‘중’, ‘하’ 평정

< 평정 요소 >

-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⑤ 직무관련 능력

- 면접시험 평정결과
 -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
 - 미흡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
 - 보통 : 그 외의 경우
- 최종합격자 결정
 - '우수' 등급 합격, '미흡' 등급 불합격
 - *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차 병합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내 달할 때까지 합격
 -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1.2차 병합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 상기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을 적용할 때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 예정 인원내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하되, 총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 전형(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시험공고	원서접수	필기시험	필기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서류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6.5.18.(월) ~ 7.20.(월)	'26.7.13.(월) ~ 7.20.(월) 18:00까지	'26.8.22.(토)	'26.9.2.(수)	'26.9.16.(수)	'26.9.18.(금)	'26.10.1.(목)	'26.10.19.(월)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필기시험 시간, 장소 및 응시자 주의사항 등 안내는 '26.8.14.(금) 관세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임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6. 7. 13.(월) ~ 7. 20.(월) 18:00
 - －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다만, 마감일은 18:00까지)
 - ※ 접수 마감일(7.20.월) 18:00 이후, 응시수수료 납부 불가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 관세국경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hrd.customs.go.kr>) > 시험정보 > 응시원서 접수 > “관세서기보(무도) 경력경쟁채용시험” 선택
 - ※ 응시표는 '26.8.14.(금) 09시부터 응시원서 접수 화면에서 출력 가능(응시번호 포함)
 - (접수 문의 : ☎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041-410-8514)
- 원활한 채용 절차 진행을 위하여, 응시자께서는 본인의 경력 또는 무도 단종 종류 및 단수가 공고상의 응시자격요건 기준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사전 확인 후 필기시험에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필수)

서류		비고
공통 필수	1. 응시원서 1부 (전자서식)	○ 응시원서사진 1매(jpg파일) * 해상도 100 이상, 규격 3.5cm×4.5cm * 파일명은 영문 또는 숫자 형식(한글 형식 저장 시 오류 발생) ○ 응시수수료 5천원 * 응시원서 제출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해당 증명서 제출)
	2. 응시자격 증빙서류 각 1부 (pdf파일)	○ 본인이 선택한 응시자격 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 단증 사본, 특수부대 경력증명서 등
	3. 경력채용이력서 1부(pdf파일)	○ <붙임3> 별지서식 제1호 참조 ○ 자필서명이 기재된 pdf 파일 제출(한글파일 아님)
해당시	3. 주민등록초본 1부(pdf파일) - 남성에 한함	○ 병역사항 기재 필수
	4. 가산특전 증빙서류 1부(pdf파일) -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 모든 응시자는 서류 업로드 시 파일명을 아래와 같이 통일(엄수)

- 각 파일명 : **성명_응시자격종류(또는 서류명).pdf**로 기재
 - (예시1) 자격증 제출 시 : 홍길동_자격.pdf
 - 경력증명서 제출 시 : 홍길동_경력.pdf
 - (예시2) 경력채용이력서 제출 시 : 홍길동_경력채용이력서.pdf
 - (예시3) <남성>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 홍길동_초본.pdf
 - (예시4) <해당시> 가산특전 증빙서류 제출 시 : 홍길동_가산.pdf

② 추후 필기시험 합격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붙임4> 별지서식 제2~5호 참조)

- 개인정보동의서, 자격검증동의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 추후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제출 방법 등 상세 내용 안내 예정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 비용(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제출 당시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④ 2명 이상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 응시수수료를 먼저 수납하고 증명서 제출 후 반환조치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응시자 요청시 본인의 면접결과를 종합한 상·중·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6. 12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 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 호봉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호봉외 급여 지급

9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 등을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 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사항 : (채용전반) 관세청 운영지원과(042-481-7707)
(필기시험)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041-410-8514)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무도		관세서기보	15명	전국세관
주요 업무		○ 마약류 등 밀수 단속 수사업무 수행 - 마약류 피의자 체포·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현장 안전 확보 및 피의자 신병확보 - 마약류 통제배달 등 수사 지원 - 마약류 사건 외 체포·압수수색 영장 집행 지원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 공동체 마인드 ○ (직무 역량) - 태권도·유도·검도 지속적 수련 역량 - 위험 상황에서의 냉정한 판단력과 신속한 대응 능력 - 팀 단위 작전 수행을 위한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 장시간 현장 근무에 적합한 체력 및 자기관리 능력 - 법 집행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 및 직무 책임감		
필요 지식		○ 「관세법」상 수출입 통관·밀수 단속 및 수사 절차 관련 기본 지식 ○ 「형사소송법」상 체포·압수·수색 등 강제처분 요건 및 절차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상 세관 공무원의 직무 권한 범위 ○ 물리적 제압 관련 무도 기술 및 현장 적용 지식 ○ 마약류 식별·증거 보전 등 현장 조사 기초지식		
응시 자격요건	자격증	① 태권도 ② 유도 ③ 검도 공인 3단 이상 보유자 (단일 종목으로 한함) ※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		
	경력	특수부대에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3년 이상 해당부대의 고유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자 ※ 특수부대: [육군] 정보사(HID), 특전사, 신속대응여단(구,특공여단), 특공연대, 강습대대, 제1산악여단(구,8특공대), 35특수임무대대(구,35특공임무대대), 군사경찰특수임무대, 수색대대, [해군] 정보사(UDU)·특수전전단(SSU, UDT)·군사경찰특임반, [공군] 항공구조사(SART), 항공특수통제사(구,공정통제사(CCT)), 군사경찰특수임무소대(반), [해병대] 특수수색대대(구,수색대대), 군사경찰특별경호대(구,군사경찰특임대)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면접)예정일까지 각각 충족하여야 함

붙임 3

경력채용이력서

[별지서식 제1호]

경 력 채 용 이 력 서

1. 공통사항 ※ 아래 회색 작성예시 등 불필요한 항목 삭제 후 pdf 제출

응시 번호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무도	응시 자격 요건	☐ 자격증 ☐ 경력 ※ 반드시 1개만 체크	성명	
----------	---------	----------	----	----------------	--	----	--

2. 응시자격 ※ 본인이 선택한 응시 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경력 사항만 작성

자 격 증	종목	단수	발급기관		자격증 취득(예정)일	
	태권도	3단	대한태권도협회		25.1.1	
경 력	군별	근무부대		계급	근무기간	담당업무
	육군	0군단 000특공연대 등		하사	22.1.1 ~ 24.12.31 (3년)	대테러 임무
	육군	0군단 000특공연대 등		하사	25.1.1 ~ 25.12.31 (1년)	특수 작전 수행
	육군	0군단 000특공연대 등		중사	26.1.1 ~ 26.04.30 (4개월)	VIP 경호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한 자격요건 기재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u>관할</u> <u>출입국·외국인청</u> <u>(사무소)</u>	공무원 채용 관리	<u>복수국적 여부 조회에</u> <u>필요한 사항</u>	<u>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u>
<u>기타 개인정보</u> <u>보유기관</u>	공무원 채용 관리	<u>학위, 경력사항 등</u> <u>응시요건 충족 및</u> <u>제출서류 진위여부</u> <u>확인</u> 에 필요한 사항	<u>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u>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분 받은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관 세 청 장 귀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관세청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관 세 청 장 귀하

자 기 소 개 서

응시 번호		성명		응시 분야	무도
----------	--	----	--	----------	----

◎ 자기소개서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자기소개서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직무분야에서의 주요 실적 및 성공사례,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특기사항,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분량은 A4 2매(이내)로 하고 신명조 12p, 가느글씨, 줄간격 160mm으로 작성

직무수행 계획서

응시 번호		성명		응시 분야	무도
----------	--	----	--	----------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분야 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 직무에 대한 이해, 소견 및 응시 취지 ②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 구체적인 실천방안 순으로 자유롭게 기술
 - 분량은 A4 2매(이내)로 하고 신명조 12p, 가늘글씨, 줄간격 160mm으로 작성